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84
----------	-------

제출년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지급대상 기준이 확대 됨에 따라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격 기준 완화
-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 강화

2. 주요내용

- 가.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경력을 지닌 현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 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서류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붙임 4】

- 바.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1. 14. ~ 2026. 2. 3. (20일간)

사. 기타 참고사항

1) 현행조례 : 【붙임 5】

2)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문화체육관광국
입안자	체육진흥과장	이 자 영
	체육진흥팀장	박 정 애
	담당자 (연락처)	김 호 선 (481-2146)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나. (생략)</p> <p><신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u>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u></p> <p>2.·3.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p>	<p>제6조(지급신청) ①----- ----- ----- ----- ----- ----- ----- -----.</p> <p>②----- ----- -----</p>

현행	개정안
<p>다. 다만, 지급 대상 체육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 6. (생략)</p>	<p>-----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u>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u></p> <p>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